

3082.
925

東 獨 旅 行

—Reisen in die DDR—



3082

동독
총서독왕비
" 인격교류

國 土 統 一 院

안 내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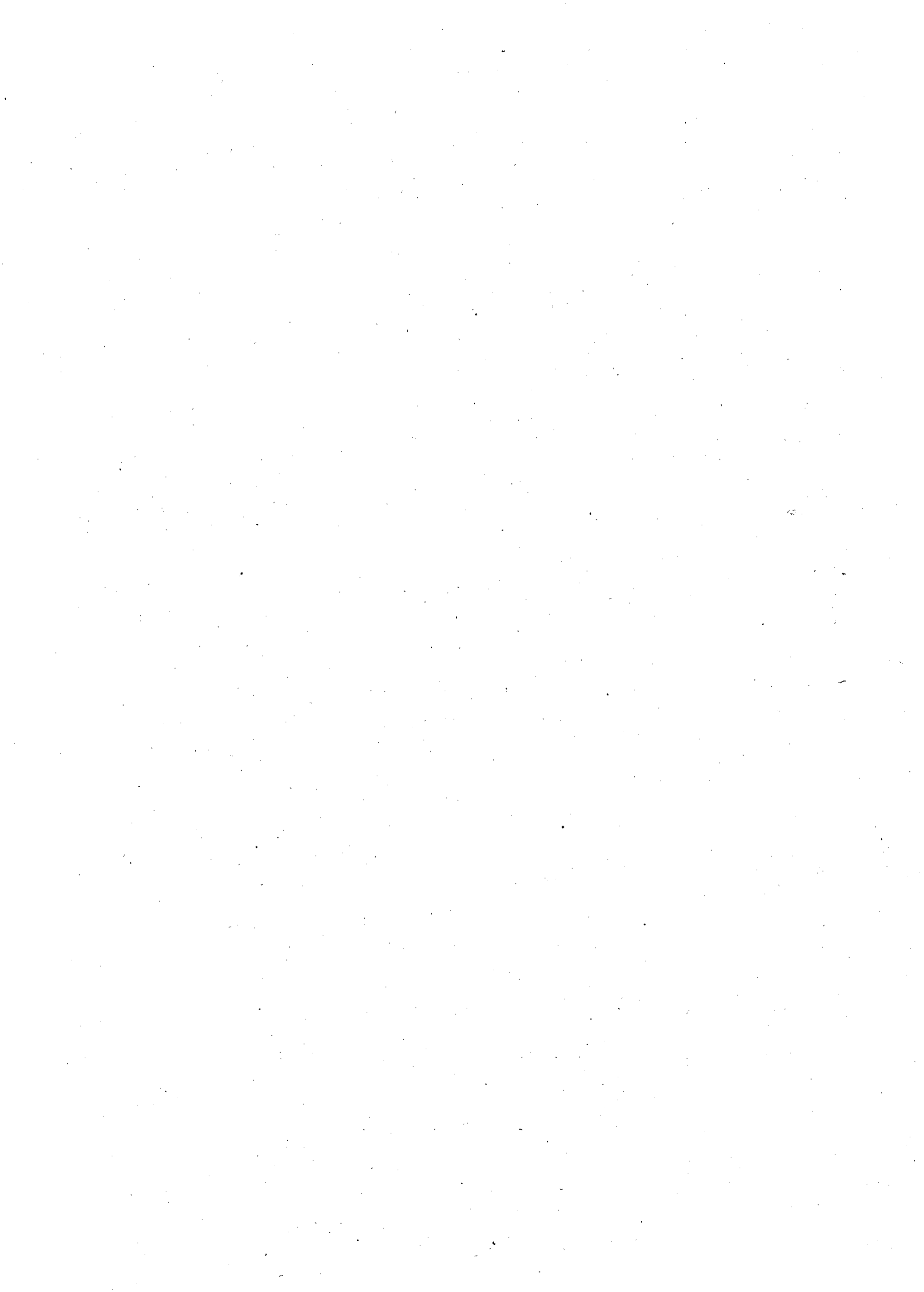
東西獨 분단이후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만 가능하였던 西베를린을 포함한 西獨주민의 東베를린 및 東獨旅行은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東西獨 基本條約” 발효와 함께 용이하여 졌다. 지금까지도 여행자의 제한을 비롯하여 여행시 밟아야 될 절차, 지켜야 될 규정과 주의사항 및 엄격한 검문과정 등 여행자에게 여러가지 부담이 지워지고 있지만 東西兩獨은 협정과 완화정책으로 旅行의 편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82년도에는 289 만명에 달하는 西獨주민이 東獨을 旅行 또는 訪問하였으며 155 만4 천명의 東獨주민이 西獨을 방문하였다. 또한 東西獨 청소년교류여행도 가능토록하여 1983년도에 5~6천명의 西獨 청소년이 東獨을, 1~2천명의 東獨 청소년이 西獨을 방문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東獨旅行”은 西獨內獨關係省이 발간한 “Reisen in die DDR”을 번역한 西獨주민이 東獨旅行을 하기 전에 읽어야 할 책으로 여러가지 해당규정과 주의사항 등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東獨旅行준비를 위한 必讀書이다.

이 책을 통하여 西獨주민의 東獨旅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運用되는가 그 내용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83. 10.



凡 例

이 안내서는

西獨인이

- 동독여행

- 동독側 접경지역의 당일방문

-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을 당일방문

- 동독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서베를린市民이

- 동독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안내서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베를린 왕래

- 西베를린 市民의 東獨旅行

- 西베를린 市民의 東베를린 방문

베를린往來에 관해서는 “西베를린行 및 西베를린發 여행”이라는 특별안내서가 있다. 이 안내서는 聯邦 內獨關係省이 펴냈으며, 독일 연방철도의 안내소나 매표소 및 여행사에서 입수할 수 있다.

西베를린 市民의 東베를린 방문과 여행에 對해서는 베를린 公報局이 펴낸 “西베를린常住民의 동베를린 및 東獨방문여행에 관한 안내서”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참조사항

체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음 장소로 문의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西獨)의 東獨駐在 常駐代表部 Hannoversche

Straße 30, DDR-1040 Berlin, 전화- 2825261

目 次

1. 가능한 東獨여행	7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10
여권-비자발급용 증명서-비자-비자수수료-東獨내에서의 신고의무	
3. 교통망과 교통수단	16
통행로-철도-차량교통	
4. 입국시 현금 휴대	24
DM最低交換額-그밖의 支拂手段의 지참-東獨마르크貨의 소지 금지-東獨內的 預金 사용	
5. 東獨入國時 물건휴대	30
6. 귀로時的 휴대품	37
7. 접경지역 당일방문	40
8. 라이프치히 박람회에 관한 특별규정	48
9. 東獨을 경유한 제3국 여행	50
서류 - 통과도로 - 통과방식	
10. 東獨에서의 공공안전, 공공질서	56
촬영금지 (부 록)	
I. 東西獨의 접경지역	59
II. 東獨 반입금지 품목과 허가수수료	63

Ⅲ. 반출금지 품목과 東獨의 허가수수료	66
Ⅳ. 물품휴대에 관한 西獨의 규정	70
Ⅴ. 사고차량 운반 및 구조반	71
Ⅵ. 도로교통 규정	73
Ⅶ. 東獨 접경지역으로 入國하기 위한 신청양식 견본	81

1. 가능한 東獨旅行

《〈年間 총 30日〉》

친척 및 친지방문

동독내의 친척 및 친지의 신청에 따라서 동독의 해당관청은 1년에 한번 또는 그 이상, 총 30日 한도내에서 방문 여행을 허가하고 있다.

《〈국경(경계)지역의 당일방문〉》

국경인접지역의 西獨 도시와 州의 주민들은 30일 한도내에서 東獨이 발행한 증명서를 갖고 있는 경우 3개월(1季間)에 9번까지 당일체류로 東獨의 접경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7장과 부록 I, VII를 참조)

30日限度에 포함되지 않는 여행:

《〈상용, 스포츠, 문화 또는 종교적 목적의 여행〉》

東獨内の 해당기관의 초청을 받으면 商用, 文化, 스포츠, 종교적 목적의 여행도 가능하다. 라이프찌히박람회 참가를 위한 여행에는 박람회 참가증명서로 충분하다.

(상세한 사항은 8장 참조)

<< 관광여행 >>

東獨 관광여행에 관한 안내는 동독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서독 여행사에서 얻는다.

여행종별 :

現在 41개 도시행 개인여행, (호텔숙박편) 버스편 당일코스 관광과 수일간의 일주여행, 수학여행 및 취미여행, 로슈톡 (Rostock) 에서 바르네뮈데 (Warnemünde) 까지의 일일 배코스, 철도편 도시여행, 단체관광, 캠핑여행.

여행종류와 여행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 77個 要目 (77 Praktische Tips) " 이라는 팜프렛에 설명되어 있다.

이 책자는 독일 연방철도 안내소와 각 여행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직접 주문할 수도 있다.

西獨 住民들의 캠핑여행을 위해서는 27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장소들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방되어 있다. 최소한 여행 40일 前에는 캠핑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에 예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행사는 장소예약, 여행비자용 증명서와 여행자 수표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1日當 그리고 14才이상의 여행자 1人當 20DM이다. 14才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여행자 수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수표는 東獨에 入國할 때 최고환율로 東獨마르크貨와 상환된다. 이 돈은 장소사용료 및 그밖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며 個人的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추가로 여행사의 수고비가 계산된다. 비자 수수료는 경계지역에서 지불한다. 캠핑장비-텐트, 住居式 자동차-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캠핑여행을 위하여 東獨으로 入國하는 경우 다음의 경계통과소를 이용해야 한다.

뤼벡 (Lübeck) - 켈름스도르프 (Selmsdorf)

라우엔부르크 (Lauenburg) - 호르스트 (Horst)

헬름슈테트 (Helmstedt) - 마리엔보른 (Marienborn)

헤어레스하우젠 (Herleshausen) - 바르타 (Wartha)

루돌프슈타인 (Rudolphstein) - 히르쉬베르크 (Hirschberg)

西베를린 (Berlin[west]) - 드레비츠 (Drewitz)

덴마크의 나룻배편으로 바르네뮈데 (Warnemünde)

스웨덴 나룻배편으로 자스넛츠 (Saßnitz)

폴란드에서 괴르넛츠 (Görlitz)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쯔발트 (Zinnwald)

캠핑여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캠핑안내서와 여행사로부터 알아 볼 수 있다.

《동베를린의 당일방문》

西獨人과 제 3 국 市民은 西베를린에서부터 東베를린의 당일방문이 언제나 가능하다.

① 東獨 경유 제 3 국 여행

東獨을 경유한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여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9 장을 참조.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여 권

동독 여행에는 여행자여권이 필요하며, 신분증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16才이상의 미성년자 역시 여행자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16才미만의 어린이는 여권대신 어린이증명서로 증명하거나 兩親 또는 父母一方의 家族旅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여행입국은 養育權者나 其他 成人을 동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행자여권은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여행만료일이 경과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異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손상되어 있지 않은지 서명이 완전한지 사진과 여권소지자의 최근의 모습이 일치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 비자발급용 증명서

동독비자는 경계에서 증명서를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개별적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청방문>>

東獨에 거주하는 초청자는(친척, 친지, 기관, 기구) 초청방문 관할관청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이것을 방문자에게 보낸다. 초청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문자의 신상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姓名, 生年月日, 出生地, 주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고용주의

주소 성명, 여행자여권 번호 및 발행관청의 표시. 방문자가 승용차로 入國하는 경우에는 초청차는 자동차 번호도 알아야 한다.

《死亡時, 생명이 위독한 경우》

東獨의 친척이나 친지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 또는 생명이 위독하다는 전보는 관할 경찰국이 확인하거나 승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요건이 된다. 관할 경찰국의 승인서는 전보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승용차의 利用에 대해서는 3장 참조

《라이프찌히 박람회참가》

라이프찌히 박람회참가 목적의 여행을 할 때는 증명서 대신 박람회참가 증명서가 통용된다. 8장 참조.

《관광여행》

관광여행의 경우 東獨여행국 총무부에 東獨여행을 주선하는 西獨여행사를 통하여 증명서를 신청한다. 접경지역 왕래 관광여행시에는 여행사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동독접경지역 당일방문》

복수-증명서가 필요하다. 7장 참조.

《東베를린의 당일방문》

西獨人과 제3국인이 東베를린을 당일 방문하는 경우 비자는 지역통과소에서 직접 동독관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다. 이때 증명서

는 필요하지 않다

《西베를린에서 포츠담 및 그밖의 장소로 당일소풍하는 경우》

西獨人들은 西베를린에서 포츠담 및 그밖의 행선지로 당일소풍여행을 할 수 있다. 所定樣式에 따른 事前 書面申請을 최소한 예정일 4週前에 西베를린 소재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에 관한 더 상세한 안내는 다음 장소에서 하고 있다.

독일여행사 (DER)

Direktion Berlin

Joachimstaler Straße 17, 1000 Berlin 15, 전화(030)8821061

《제 3 국인과 無國籍者》

제 3 국인과 無國籍者는,

東獨여행국 총무부

Alexanderplatz 5 (Postschlieβfach 77)

DDR-1026 Berlin 장거리전화 2154486 또는 2154482 에서 빠른 시간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여행이 아니고 東獨內的 친척이나 친지방문(호텔에 투숙하지 않는)이 목적인 경우에는 동독여행국 주소에 "방문여행과"라고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 비자발급과 비자수수료

비자는 통과소에서 증명서 내지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제시하고 발급받는다. 비자를 받을 때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二日以上の 長期동독여행시 15 DM

접경지역 및 東베를린의 당일방문시 및 그외의 동독지역 당일방문시 5 DM. 16才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비자수수료가 없다.

<<비자수수료 상황>>

16才以上の 西獨여행자에게는 西獨의 國庫에서 비자수수료가 환불된다.(西獨인이 東베를린에서 당일체류하는 경우는 제외)

이 여행자들에게는 西獨 관세청이 東獨行 경계통과소에서 해당 환불액을 주며 승용차 여행자는 東獨 入國前에, 철도여행자는 東獨에서 귀환한 後에 지불한다. 환불신청서와 여행자여권을 제시하면 모든 우체국은 환불액을 지불해 준다. 東베를린이나 東獨을 長期 방문한 後 西베를린으로 돌아 온 西獨인은 여행이 끝난 後 동물원 (Zoologischer Garten) 驛 세관출장소나 베를린-테겔공항 (Berlin-Tegel) 세관에서 환불받는다.

◎ 東獨內에서의 申告義務

<<신고와 귀환신고, 체류허가>>

長期여행시-접경지역 당일방문, 東베를린의 당일방문 및 東獨경유

제 3 국행 통과여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방문자는 도착한 후 24 시간 이내에 첫 체류지 관할 경찰서 내지는 경찰 신고소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비자발급을 위하여 증명서를 신청했던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東獨內에서 目的地로 가는 또는 目的地로부터 돌아오는 경우 여행을 잠시 중단하는 일이 허용된다. 그러나 통과여행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체류허가는 申告時에 나오며 이것은 여권에 기재된다. 체류허가는 일반적으로 全東獨에 유효하다.

東獨에서 돌아오기 前에 반드시 경찰관서(경찰서, 경찰신고소)에 귀환신고를 해야한다. 이 申告는 東獨의 최종체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경찰서, 경찰신고소)에 할 수 있다.

작은 지방의 경찰관파출소는 토, 일요일 및 公休日是 근무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규정되어 있는 24시간의 기한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東獨 도착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주말에 돌아올 경우에는 미리 금요일에 귀환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 罹病時 행동

東獨체류시 급성질병이나 사고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東獨과 체결되어 있는 협정에 따라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다.

의료보험카드는 필요없으며 여행자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입원치료로 인하여 동독체류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는, 동독
당국은 연기된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最低額交換규정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3. 교통망과 교통수단

◎ 西獨에서 東獨으로 가는 통행로

<<도로>>

B104 뤼벡 (Lübeck) - 슐루툽 (Schlutup) - 켈름스도르프 (Selmsdorf)

B5 라우엔부르크 (Lauenburg) - 호르스트 (Horst)

B71 베르겐 (뚬메) Bergen (Dumme) - 잘쯔베델 (Salzwedel)

A2 헬름슈테트 (Helmstedt) - 마리에보른 (Marienborn)

B247 두더슈타트 (Duderstadt) - 보르비스 (Worbis)

헤어레스하우젠 (Herleshausen) - 바르타 (Wartha)

B19 오이센하우젠 (Eußenhausen) - 마이닝겐 (Meiningen)

B4 롯텐바흐 (Rottenbach) - 아이스펠트 (Eisfeld)

A9 루돌프슈타인 (Rudolphstein) - 히르쉬베르크 (Hirschberg)

요즈음은 버스와 승용차로만 모든 통행로를 통과할 수 있다. 모페트, (엔진달린 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도보로는 통과할 수 없다

고속도로 이외의 통행로에는 운행시간표대로 왕복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7장 참조.

<<철도>>

뤼베크 (Lübeck) - 헤른부르크 (Herrnburg)

뷔헨 (Büchen) - 슈완하이데 (Schwanheide)

볼프스부르크 (Wolfsburg) - 외비스펠데 (Oebisfelde)

헬름슈테트 (Helmstedt) - 마리엔보른 (Marienborn)

베브라 (Bebra) - 게르슈통엔 (Gerstungen)

루드비히슈타트 (Ludwigsstadt) - 프로프스트젤라 (Probstzella)

호프 (Hof) - 구텐퓌르스트 (Gutenfürst)

운행시간표와 요금에 관한 더 상세한 안내는 독일연방철도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 베를린의 통행로

<<東獨여행에 限함. 東베를린 당일방문은 해당되지 않음>>

드라이린덴 (Dreilindn) - 드레빗츠 (Drewitz) : 자동차편 여행자

또는 베를린-완제 (Berlin-Wansee) 까지 운행하는 버스편 여행자.

헤르슈트라세 (Herrstraße) - 슈타켄 (Staaken) : 승용차여행자 또는

도보여행자

<<西獨人의 東베를린 당일방문>>

보른홀머슈트라세 (Bornholmer Straße) :

프린젠슈트라세 (Prinsenstraße) -

하인리히 - 하이네 - 슈트라세

(Heinrich - Heine - Straße) :

} 자동차여행자
또 는
도보여행자

프리드리히슈트라세 (Friedrichstraße) 驛 : 특급열차 및 지하철편 여행자.

베를린내에 있는 그밖의 통행로는 西獨人이 利用할 수 없다. 外國人이 東베를린을 당일방문하는 경우에는 프리드리히슈트라세驛과 찰리 (Charlie) 검문소 (코흐슈트라세 地下鐵驛에 위치) 사이의 통행로가 사용가능하다.

◎ 통행로의 利用

<< 통행로 선택 >>

위에서 언급한 제한사항을 제외하면 통행로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西獨지역에서 東獨으로, 西베를린에서 東獨으로, 外國에서 東獨으로의 入國이 가능하며, 東獨에서의 出國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9 장 참조)

東獨에서 장기체류하는 동안 여행을 다니는 경우에 동일한 통행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접경지역 당일방문의 경우 出入國은 반드시 東獨 방문지와 가장 가까운 통행로를 사용해야 한다.

<< 利用時間 >>

베를린에 있는 다음 통행로를 제외하면 모든 통행로는 주야로 개방된다.

프리드리히슈트라세 (Friedrichstraße) 驛

6 - 24 時

보른홀머슈트라세 (Bornholmerstraße)

7 - 24 時

프린젠슈트라세 (Prinzenstraße) - 하인

리히 하이네 슈트라세 (Heinrich

Heine Straße) 7 - 24 時

20 時까지만 進入가능

◎ 승용차 利用

<<특별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경우>>

東獨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여행하려면 특별허가가 필요한 데 특별허가는 증명서 또는 긴급사유로 인한 入國인 경우에는 확인 받은 전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승용차허가는 초청자가 입국허가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승용차허가는 거의 예외없이 나온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여행) 증명서에만 기재된다. 그밖의 동반자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도 승용차에 동승할 수 있다. 東베를린 당일방문과 라이프찌히박람회 참석을 위한 여행인 경우에는 허가없이도 가능하다.

접경지역 당일방문시 승용차 利用과 라이프찌히박람회에 관해서는 7 장과 8 장 참조.

캠핑서류의 경우 여행국에 등록이 될때에 限해서 승용차는 번호표를 달고 入國할 수 있다.

오토바이로 入國하는 것을 최근 동독관청은 금하고 있다.

《차량 諸證明 서류와 책임보험》

운전면허증과 차량 諸證明 서류는 보통때처럼 소지하고 가야한다.

西獨경찰의 표지를 단 차량은 추가로 책임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녹색 보험카드>는 필요치 않다. 外國차량은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DM, 또는 자유롭게 교환가능한 他國화폐로 경계통과소에서 지불한다.

東獨과 보험보호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國家의 차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량의 교통안전》

차량은 東獨의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東獨의 도로교통법은 西獨의 그것보다 더 嚴格하다.

모든 차량이 안전한 往來 안전운전을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도로교통법 규정》

西獨과 크게 다른 東獨 도로교통 규정은 부록Ⅵ에 수록되어 있다.

《도로사용료》

1980년 1월 1일 이후부터 승용차여행자는 경계통과소에 도로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낼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하여 서독정부는 매년 일괄적으로 총액을 동독정부에 지불하고 있다.

《연료(휘발유) 준비》

東獨에 入國할 때는 (2日以內의 短期여행은 제외) 연료를 자동차탱크에 그리고 20ℓ까지 예비탱크에 수수료 없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出國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東獨의 Intertank 주유소에서 급유를 할 때는 반드시 DM(서독 마르크)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밖의 東獨內 주유소에서는 동독마르크로 판매하고 있다.

미리 모든 주유소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교환권을 살 수도 있다. 휘발유교환권은 現金으로 반환될 수는 없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고와 고장》

東獨에는 상설 차량구조반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東獨이 출판한 안내서 참조.(부록 V)

西獨 및 西베를린에서 온 여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독국영 보험관할 지역에 승인 또는 등록되어 있는 차량소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HUK-조합이 처리한다.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HUK-조합에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다. HUK-조합 주소: Glockengieβerwall 1(Klosterburg), 2000 Hamburg, 전화 (040)321071.

직접 동독국영보험에 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기타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HUK-조합은 중개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事故時點과 事故地點에 관해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기차표, 요금할인》

西獨지역내의 매표소에서 돌아올 차표(하행표)를 살 수 있다. 돌아올 차표를 東獨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DM(서독마르크)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방철도(서독철도)지역내에서 차표를 구입하는 경우 만 4歲부터 만 12歲까지의 어린이는 上·下行 共히 50% 할인혜택을 받는다. 돌아가는 차표(下行표)를 東獨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독일제국철도(동독철도)는 요금표에 따라서 10歲이상의 어린이에게는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다. 독일연방철도(서독철도)의 경로우대증을 소지하고 있는 서독주민은 東獨 目的地까지의 독일제국철도(동독철도) 上·下行 구간에서는 33.3%의 할인을 받는다. 東獨內에서의 철도여행은 요금할인 혜택이 없다.

다음 4장에서 7장까지 언급되는 出入國時 現金 및 물건휴대에 관한 지시사항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東獨의 관세 또는 외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독관청은 매우 高額의 벌금형을 과한다. 여행자가 벌금을 내는 데 충분한 現金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벌금이 現金으로 납부될 때까지 여행자의 승용

차가 담보로 留置된다.

일반적으로는 승용차를 유치하지 않고 나머지 벌금지불을 기한을 정하여 연기해 주고 있다. 이 때 동독당국은 벌금잔액을 경제통과소에 現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대체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관한 안내와 필요한 허가는 관할 Landeszentral 銀行(州中央銀行)에 비치되어 있다.

4. 현 금 휴 대

《 申 告 》

東獨에 入國하는 경우 휴대하는 지불수단 (DM 額數 및 자유로이 교환가능한 其他 貨幣額) 을 《휴대품 및 휴대지불수단 명세서》에 기록해야 한다. 東獨에서 出國할 때도 같은 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 DM 最低額交換

東獨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1人當 체류일수當 지불수단의 최저 교환액이 규정되어 있다. DM은 東獨마르크와 (1:1) 교환된다. 最低額交換은 자유로이 교환가능한 화폐도 할 수 있다.

最低交換額 :

東獨여행시 체류 1日當 13 동독마르크

西베를린에서의 동베를린 당일방문시 6.50 동독마르크

《 最低額交換 면제 》

최저액교환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入國時에 만 16歲 미만자 또는 연금생활연령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연금생활 연령은 여자는 만 60歲以上, 남자는 만 65歲以上이다.

66 $\frac{2}{3}$ % 이상의 신체장애 연금생활자 및 재해 연금생활자는 연금생활연령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와 같은 동독연금법 개념은 西獨의 취업불능 연금생활자, 생계불능 연금생활자 및 70% 이상의 생계능력을 상실한 근무불능 은퇴관리와 상응한다. 최저액 교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신체상해정도에 대한 증명은 해당자의 관할지역 給養保護所의 해당 증명서로 할 수 있다.

東獨入國時 이 증명서와 연금증서를 함께 제출하면, 최저액 교환이 면제된다.

직접적인 권리자만이 최저액 교환을 면제받을 뿐 동반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停年退職金受領者, 미망인 연금생활자, 또는 실업자원조수당을 받는 자는 최저액 교환을 면제받지 못한다.

《交換場所와 時期》

최저액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경찰에 申告하기 前에 (당일 방문은 비자획득시) 교환하여야 한다. 동독당국은 비교적 큰 驛이나 방문지에 소재한 동독國立銀行 환전소에서 교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東獨 환전소의 개점시간이 서독의 경우와 같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환전소에 관한 안내는 모든 金融機關 및 市廳 또는 방문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준다.

보통 東獨에 入國할 때 열차안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交換된 最低金額의 사용 - 환급불가》

交換된 最低額의 돈은 東獨內에서 다 써야 한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은 환급받을 수 없다.

최저교환한 금액은 예를 들면 東獨內에서 차표구입을 할 때(경계와 목적지 사이의 上·下行 여행은 해당되지 않음)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최저교환한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돈은 東獨國立銀行 경제환전소에다 맡길 수가 있다.

이때 보관증에 쓰여져 있는 조건, 특히 지불기한(상환기한)에 주의하라. 또한 東獨國立銀行지점(東베를린에서는 Stadtkontor 市支店)에 <外換外國人計定A>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外換外國人計定A>는 東獨內에서 거의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

◎ 그밖의 支拂手段의 지참

모든 여행자는 最低額交換에 필요한 DM 이외에도 더 많은 DM을 東獨여행시에 지참할 수 있다.(자유로이 교환가능한 그밖의 화폐도 마찬가지이다.)

西獨에서 시행되고 있는 外換규정에 따르면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現金 그리고 東獨內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用品과 소모품의 구입을 위해 필요한 現金의 지참이 허용된다.

나아가서 東獨內에서 구입해서 선사하려는 물건과 팁을 위해서 총 1000 DM까지의 현금지참이 허용되고 있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선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州中央銀行 (Landeszentralbank)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페이지에 있는 DM의 선사項 참조)

《交換과 사용》

최저교환액 이상으로 가지고 온 DM은 전부 또는 일부 東獨國立銀行 또는 國立銀行으로 위임받은 金融機關과 환전소에서 1:1의 比率로 동독마르크로 교환할 수 있다. Interhotels, Interschops, Intertank 및 일정한 상점에서는 DM으로 지불해도 된다.

出國時에 제시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환 영수증과 물건구입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DM의 선사》

東獨外換法에 따르면 여행자는 東獨의 住民에게 DM을 선사할 수 있다.

동독규정에 의하면 최고액의 제한은 없다.(그러나 앞의 《그밖의 지불수단의 지침》項을 참조) 선사에 대한 영수증은 교부받을 필요가 없다. 선사받은 사람은 이 돈을 DM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시설(예컨데 Intershop, Intertank)에서 모두 사용해야 한다.

《還 給》

체류중 사용하지 않은 東獨마르크貨는 東獨에서 東獨國立銀行의

교환증명서를 제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다시 DM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환전소 및 통과소, 열차안에서 할 수 있다. 기탁을 해두거나 "外國人外換計定A"에다 예금해 두는 것도 가능하다. <最低額交換 참조> 最低交換額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注意! 不法으로 환전하지 말 것!

東베를린과 東獨內에서는 東獨마르크貨와 東歐의 화폐를 公的으로 허가가 나 있는 환전소에서만 환전해야 한다.

절대로 個人에게 환전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될 뿐 아니라 사기꾼에게 사기당할 수도 있다.

◎ 東獨마르크貨의 소지 금지

東獨마르크貨와 東歐國家의 화폐를 소지하는 일은 入國時, 出國時를 막론하고 금지되어 있다.

◎ 東獨內의 預金 사용

東獨國立銀行 "外國人外換計定B" (소위 폐쇄계정 (Sperrkonto)) 를 가지고 있는 여행자는 東獨에서 체류비를 지불하는 경우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16歲미만의 자녀나 孫子를 위해서, 체류 1日當, 1人當 東獨마르크貨로 15 마르크까지 當계정에서 지불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前 적당한 시기에 當구좌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에 當구좌가 처리될 수 있는 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 체제를 위한 월경증명서류(비자, 체류허가서)가 필요하다. 돈은 미리(최고 2주) 또는 사후에(1주) 지불된다.

商用여행과 라이프찌히 박람회참석 여행인 경우에는 同 計定에서 1日, 1人當 40 동독마르크까지 지불된다.

폐쇄계정(Sperrkonto)에서 돈을引出할 수 있고, 年金生活者가 아닌 사람은 最低額 交換을 면제받지 못한다.

東獨内の 計定사용방법에 관한 특별안내서는 Gesamtdeutsches Institut -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Postfach 1640, 5300 Bonn 1에서 얻을 수 있다.

5. 東獨入國時 불건휴대

◎ 여행수하물의 발송

발송된 수하물은 보통 여행자의 입회없이 검색되기 때문에 수하물이 개봉되어 禁止品은 압수된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 여행용품 및 소비품

東獨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용품은 허가와 수수료없이 가지고 들어가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 여행용품이라 함은 여행중 또는 목적지에서 체재중 여행자의 개인적인 필요나 직업상 필요한 물품으로 규정되고 물품의 종류와 양은 여행의 目的이나 期間에 상응해야 된다.

기타 사진기, 털외투 또는 값비싼 東獨製 個人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入國時 휴대허가를 받도록 한다.

여행시의 소비품들도 마찬가지로 허가없이 그리고 수수료없이 가지고 들어가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종류나 양으로 보아 일정한 장소까지 가는 데 여행자가 필요한 만큼의 식료품과 기호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행용품 또는 소비품은 東獨內에서 판매, 交換 뿐만 아니라 담보로 잡힐 수 없다. 여행중 사용할 물건을 선물로 선사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손목시계, 계산기, 라디오, 가죽자켓 등 값비싼 물건을 휴대하고 가는 경우에는 東獨入國時 그 明細가 기록되며 돌아올 때는 東獨의 국경통과지점에서 이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의약품》

여행자의 건강상태로 보아서 필요한 의약품, 의료소모품과 의료기구는 휴대할 수 있다.

◎ 선물의 휴대

《申 告》

東獨체류를 위해서 일정한 물건은 "휴대품 및 휴대화폐에 관한 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은 국경에서 얻거나 여행자에게 증명서와 함께 교부된다. 신속하게 일을 마치려면 入國前에 서식에 기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수수료면제 선물의 휴대》

東獨에 入國할 때는 당국의 허가나 수수료없이 다음과 같이 선물을 휴대할 수 있다.

5日以內的 短期여행의 경우, 체류 1日當 1人當 東獨마르크貨로 총 100 마르크 상당까지. 長期여행시에는 1人當 총 500 마르크까지.

커피, 코코아와 코코아가공품, 초콜렛상품, 담배, 酒類, 포도주, 삼페인, 기타 기호품들은 수량의 제한없이 허가와 수수료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물건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東獨內의 小賣商 價格에 준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東獨內에서 수요가 많은 商品과 사치품들은 서독지역보다 수배나 더 값이 나가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다. 의문나는 점이 있을 때는 東獨內의 초청자에게 문의하라.

자동차부속품과 귀금속, 보석, 준보석, 진주 및 上記 재료로 만들어진 상품들은 항상 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지불의무가 있는 선물의 휴대》

許可限度 이외에도 東獨關稅廳의 許可를 얻은 선물은 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 수수료는 10%~40%이다.

상세한 수수료 요목은 수수료 요강 부록Ⅱ를 참조.

이 때도 價格은 東獨의 小賣商 價格에 준한다.

부록Ⅳ에 실린 西獨의 규정 참조.

◎ 搬入금지와 搬入제한

일련의 상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중요사항은 부록Ⅱ에 제시되어 있다.

《物品기탁》

여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경우이거나 물건의 반입금지품목일 때) 검색을 받고 있는 물건을 합

법적으로 東獨關稅廳에 기탁할 수 있다.

폭발물, 독극물, 살아 있는 동물과 위생상 위험한 물건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탁할 때는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기호품에 대해서는 수량제한이 없음》

16歲以上の 모든 사람은 선물용으로 或은 여행중 소비품으로 수량의 제한없이 수수료 면제한도를 고려할 필요없이 기호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때 전제가 되는 것은 商品으로 팔 물건으로 판단되는 양의 기호품은 휴대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거나 선물받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이 그 기준이 된다.

《사진기재와 필름類》

사진기 한 대 그리고 필름을 포함해서 필요한 부속품이 갖춰진 아마추어 小型映畫 카메라 한대는 휴대가 가능하다. 필름휴대 限度는 없다. 그러나 필름의 수요가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필름搬出의 금지는 入國時 휴대한 필름이나 東獨에서 DM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교환한 東獨마크貨로 구입한 필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구가 있으면 필름구입 영수증과 換錢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촬영금지사항을 주의 하시오.

이것은 영화촬영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소형영사기 및 필름과 환등

기 및 슬라이드는 그 내용 내지 필름반입이 社會主義國家와 市民의 이익에 反하지 않는 경우에만 반입, 반출이 가능하다.

《植物과 植物部分의 휴대》

개인여행의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즉 모든 통과로에 대해서 식물 위생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서도 휴대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꽃다발,
- 吊花,
- 침엽수 가지 및 흙에 심지않은 침엽수,
- 2.5 kg이내의 生果,
- 열대성 과일,

그밖에 植物, 植物部分 그리고 식물제품류는 모든 통과로에 대해서 휴대가 許可되고 있지는 않으며, 또 식물 위생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하다. 의문나는 점은 식물보호소 및 국경검색소가 안내해 준다.

《소시지제품과 육류제품의 휴대》

개인적인 여행의 경우 - 자기 자신의 소비나 선물용으로 -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총 5 kg까지의 가공육류 - 예컨대 햄, 베이컨, 소시지와 카셀러 (돼지의 갈비살을 소금에 절여 가공한 것)는 국가수의사의 증명서는 필요치 않다.

西獨에 위험한 동물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東獨官廳은 앞에

서 언급한 육류의 휴대를 당분간 금지시킬 수 있다. 신문에 나는 이에 관한 지시사항에 유의 하시오.

날 육류, 냉동 또는 소금에 절인 육류는 휴대해서는 안된다.

《개와 고양이》

개(맹인견포함)와 고양이를 데리고 가려면 여행기간전 5日以內에 발행된 國家獸醫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증명서에는 다음 사실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진찰時에 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험한 어떠한 병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口蹄病(전염병의 일종) 및 광견병, 기타 다른 개나 고양이에게 전염될 병이 發生하여 폐쇄된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

-광견병 접종후 최소한 4주가 지난 사실,

동독체류기간이 4주이내인 경우에만 개와 고양이를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맹인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베르겐(뚝메) Bergen(Dumme) - 잘쯔베델(Salzwedel), 두더슈타트(Duderstadt) - 보르비스(Worbis), 오이센하우젠(Eußenhausen)

-마이닝겐(Meiningen) 과 룩텐바하(Rottenbach) - 아이스펠트(Eisfeld) 통과로에서는 맹인 인도견의 동행만이 허용된다.

◎ 東獨체류를 위하여 규정된 것 이외의 선물휴대

방문자가 동독체류 기간중에 좀 더 여행을 하려고 하여, 동독체류를 위하여 규정된 것 이외의 선물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東獨入國時 국경에서 선물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東獨을 出國할 때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삿짐과 상속재산》

이삿짐과 상속재산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東獨旅行時 가지고 갈 수 있다. 이삿짐과 상속재산을 東獨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의 전제조건에 관한 안내서는 全獨研究所 (Gesamtdeutsches Institut) -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 Postfach 1640, 5300 Bonn 1에서 얻을 수 있다.

6. 귀로時的의 휴대품

《申 告》

東獨에서 선물로 받았거나 구입한 물건들은 "휴대품 및 휴대 화폐 明細書"에 기록하여야 한다.

물건들은 일상적인 소매 판매단위에 限해서만 搬出될 수 있다.

《반출금지》

일련의 물건들은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중요한 사항은 부록Ⅲ에 열거되어 있다.

선물 또는 폐쇄계정 (Sperrkonto) 금액으로 구입한 물건에는 부록Ⅰ,Ⅱ에서 열거된 반출 금지품목이 적용된다.

DM이나 합법적으로 교환한 동독마르크貨로 구입한 물건에는 부록Ⅰ에 열거된 반출금지품목만이 적용되고, 부록Ⅱ의 품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예술품, 골동품, 史的 資料, 東獨에서 출판된 古書를 東獨 여행왕래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외의 경우는 區廳 내지 市廳, 文化財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출이 가능한지를 반출하기 前에 감정받을 필요가 있다. 감정허가를 받은 전문가에 관해서는 域間關稅廳 (Binnenzollämter) 과 東獨의 문화동맹사업소 (Geschäftsstelle des Kulturbundes)가 안내를 해준다.

이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형벌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수수료면제 선물의 휴대》*

東獨에서 돌아올 때는 다음의 총액내에서 허가없이, 수수료없이 선물을 휴대할 수 있다.

- 5日以內의 短期여행時에는 1人當, 체류1日當 東獨마르크貨로 20 마르크
- 長期여행時에는 1人當 東獨마르크貨로 100 마르크

《수수료를 내고 더 많은 선물휴대》*

관할 東獨關稅廳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규정금액 限度 以外에도 선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수수료는 10%~50%이며 DM으로 지불도 가능하다.

《수수료없이 구입상품휴대》

東獨에서 DM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환전한 東獨마르크貨로 구입한 개인필요품은 일반적인 소매판매단위에 限해서 허가나 수수료없이 휴대가 가능하다. 귀향시 요구가 있으면 환전증명서와 구입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西獨의 규정에 관해서는 부록Ⅳ 참조.

주 * 폐쇄계정으로 구입한 물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잊어버리고 간 여행물품의 後送》

東獨에 남기고 온 여행用品은 東獨內의 勸척과 勸지가 추후에 보내줄 수 있다. 요건은 간단해서 勸척이나 勸지는 직접 또는 서면으로 가장 가까운 東獨關稅廳에 문의하여 재반출을 신청하며, 어떤 여행用品을 누가 東獨에 남겨 놓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통편(기차, 우편)으로 그것을 재반출하려는 지를 상세히 설명하면 된다.

《이삿짐과 상속재산》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삿짐과 상속재산을 여행시 동독으로부터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한 안내는 全獨研究所(Gesamtdeutsches Institut) -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 Postfach 1640 5300 Bonn 1 에서 받을 수 있다.

7. 接境地域 當日訪問

《접경지역 往來》

접경지역의 도시와 州에 거주하는 西獨住民은 1년에 30日以內, 단 四分期(3個月)당 9日以內의 범위내에서 복수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東獨의 접경지역으로 入國이 허용된다.

각 개별적인 모든 여행의 時期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친척과 친지방문이 目的일 때에도 순수하게 관광이 목적일 때에도 당일체류가 가능하다. 비자는 여행자여권과 복수 증명서를 제시하면 발급된다. 방문자가 가장 가까운 통과로를 利用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접경지역 往來에 관한 중요한 특별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누가 여행할 자격이 있나?》

부록 I의 B項에 열거되어 있는 지역중의 한 곳에 자신의 住所를 가지고 있는 西獨의 접경지역의 모든 주민은 여행자격이 있다.(이 안내서 마지막에 실린 지도 참조)

居所(第2住所)나 접경지역 방문체재로는 부족하다. 주소가 접경지역에 있다는 것은 여행자 여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자 여권을 정정하거나 추가로 신분증 내지 호적관청의 신고확인증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방문이 가능한 東獨의 접경지역은 어느 곳인가?》

접경지역 往來에 있어서 당일체류를 위해서는 부록 I의 A項에 열거된 東獨의 區(크라이스)로 여행할 수 있다.

접경지역에 있는 東獨의 특정한 區(Gemeinde)와 장소는 방문할 수 없다. 이같은 장소의 목록은 신청서식을 교부하는 장소(지방관청) 및 西獨의 접경지역의 여행사에 비치되어 있다.

《복수증명서의 申請》

복수증명서는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東獨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지가 그 지방의 관할관청(旅券課 호적관청 또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서면으로 신청을 한다. 그리고 나서 신청자는 西獨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지에게 복수증명서를 송부한다.
2. 西獨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여행 有資格 住民은 東獨의 관할관청에 우편으로 복수증명서를 신청한다. 신청양식(부록Ⅶ의 견본 참조)은 서독의 접경지역 지방관청에서 받는다. 신청서는 방문코자하는 區의 경찰서에 보내진다. 경찰서의 주소는 그 지방이름과 일치한다. 지방이름과 우편번호를 쓰고 경찰서라고 하면 된다. 예컨대 경찰서 東獨-5800 Gotha(거리이름은 불필요하다.)

증명서는 여행전 적당한 시기에(4-6주) 신청해야 한다. 신청양식은 모든 여행자에게 正本과 副本 2부씩 교부되고 있다. 원칙

적으로 成人이 同行해야 入國할 수 있는 16歲미만의 미성년자는 그를 동반할 成人 한 사람의 신청서에다 기재해야 한다.

하나의 복수증명서를 가지고 東獨의 여러 접경지역으로 당일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양식의 "동독내에서 목적하는 당일체류"란에다 접경지역을 세 곳까지 기입해 넣을 수 있다.

《당일방문은 1年中 30日만 가능》

복수증명서는 年間 일반적인 방문日數 30日을 다 사용하지 않고 아직 남아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복수증명서 소지의 당일체류는 체류가 사실상 行하여진 경우에만 日數에 계산된다.

복수증명서를 3개월의 유효기간 동안 完全히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1日 방문일수를 나머지 기간중에 1년간 30日의 범위내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교통로와 교통수단

《접경지역 往來時 통과로》

접경지역 往來時에는 모든 통과도로와 통과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東獨入國時에는 東獨의 방문지와 가장 가까운 통과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때문에 지나치게 멀리 우회하는 경우에는 교통상 편리한 통과로를 利用해도 좋다. 出國할 때는 원칙상 入國할 때와 동일한 통과로를 이용해야 한다.

《버스의 往復運行》

모든 통과도로에는 (헬름슈테트 (Helmstedt) - 마리엔보른 (Marienborn) 과 루돌프슈타인 (Rudolphstein) - 히르쉬베르크 (Hirschberg) 의 두 고속도로 통과로는 제외) 정규버스노선 (왕복운행) 이 개설되어 있다. 그 노선은 다음 지점들을 연결하고 있다.

- 뤼벡 (Lübeck) - 슬루툽 (Schlutup) (市場) - Service Station 쉘름스도르프 (Selmsdorf) - 쇠베르크 (Schönbeng)
- 라우엔부르크 (Lauenburg), ZOB-호르스트 (Horst) 전환점 - 보이젠부르크 (Boizenburg)
- 베르겐 (뚝메) (Bergen) (Dumme)*, 우체국 - 잘쯔베델 (Salzwechel) Service - Station - 잘쯔베델 (Salzwechel)
- 두더슈타트 (Duderstadt) (지하교회) - 보르비스 (Worbis) Service - Station - 라이네펠데 (Leinefelde)
- 헤어레스하우젠 (Herleshausen)**, Ortsmitte und Grenze - 바르타 (Wartha) Service - Station - 아이젠아흐 (Eisenach)
- 멜리히슈타트 (Mellrich Stadt) 驛 - 마이닝겐 (Meiningen) Service - Station - 마이닝겐 (Meiningen) 驛
- 코부르크 (Coburg), 驛 - 롯텐바흐 (Rottenbach), Ort-아이스펠트 (Eisfeld) Service - Station - 아이스펠트 (Eisfeld) 중앙 버스정류장

*) 뤼코프發 · 着노선이 있음.

***) Bebra 驛 발 · 착 주말노선이 있음.

왕복버스 운행은 서독지역 운수회사가 실어오고 실어가는 서비스인데 同 버스는 분기점까지 또는 東獨의 각 통과소 뒤에 있는 Service - Station까지 운행되고 있다.

東獨의 왕복버스는 분기점 내지 Service - Station과 여기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東獨의 교통연결지점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조사는 버스안에서 行해진다. 조사를 마친 後 여행자는 분기점 내지 Service - Station에서 東獨왕복버스로 갈아탄다. 왕복버스의 종점에서 東獨으로 계속 여행을 할 때는 공중교통수단(철도, 버스노선) 기타 방법(친척이나 친지의 마중, 택시)을 利用할 수 있다.

왕복버스의 운행시간표는 시읍면의 관청과 접경지역의 여행사에서 얻을 수 있다.

東獨内の 교통수단 연결방법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안내소에다 문의하면 된다. 안내는 東獨의 분기점과 Service - Station에서도 받을 수 있다.

《버스편 東獨行 소풍》

소풍모임에 관해서는 여행사가 안내를 해 준다. 이미 복수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소풍에 참가할 수 있다. 소풍중에 방문할 區(크라이스)를 복수증명서에 기입할 필요는 없다. 복수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소풍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복수증명서를 통상적인 방

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풍에 10人以上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東獨은 개인증명서를 근거로 비자수수료가 대폭 할인되는 단체비자 (Sammel visum) 를 발급한다.

《철 도》

접경지역 당일방문시에는 운행시간표대로 운행되는 경계통과 장거리 수송열차를 利用할 수 있다. 그밖에도 추가로 3개의 열차노선이 가설되어 있다.

- 헬름슈테트 (Helmstedt) -마리엔보른 (Marienborn) 아일스레벤 (Eilsleben) 까지
- 루드비히슈타트 (Ludwigstadt) -프로프스트젤라 (Probstzella), 잘펠트 (Saalfeld) 까지
- 호프 (Hof) -구텐퓌르스트 (Gutenfürst) -쉴베르크 (Schönberg) 플라우엔 (Plauen) 까지

더 상세한 안내는 그 지역 독일연방철도 (서독철도) 의 안내소가 맡고 있다.

東獨의 접경지역내에 있는 모든 驛에서 귀로行 차표를 팔지는 않는다. 때문에 여행을 떠날 때 미리 下行표를 사두어야 한다.

《승용차》

승용차를 가지고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東獨入國 신청서" 에다 승용차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유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경계통과와 東獨에서의 체류》

東獨의 검사기관에 여행자여권과 복수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일체류를 위한 비자는 비자수수료를 지불하고 最低額交換 後에 발급된다.

入國時에 "휴대품 및 휴대화폐 明細書"와 "조사서"가 요구된다. 出國時에도 같다.

첫번째 入國時 서식은 복수증명서와 함께 여행자에게 송부된다. 두번째 以後의 여행의 경우에 서식은 그 前回 入國時 때마다 手交된다.

그러므로 일을 신속히 마치기 위해서는 入國 내지 出國을 하기 前에 서식을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經 費》

당일체류의 경우에는 5 DM 비자수수료와 최저액 교환으로 13 DM을 지출해야 한다.

《지불수단(貨幣)과 물건휴대》

이 문제에 관해서는 4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부록Ⅱ에서Ⅳ까지 참조. 당일체류인 경우에는 다음의 특별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선물은 1人當 100 동독마르크 상당이하까지는 허가없이, 수수료없이 東獨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出國할 때에는, 선물 또는 구입한 물건은 20 동독마르크 상당까지는 허가와 수수료없이

이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 限度를 넘을 때에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東獨에서 DM이나 합법적으로 交換한 東獨마크貨로 구입한 물건에는 이 限度는 적용되지 않는다.

《東獨 당일체류》

당일체류용 비자는 동독접경지역 체류자격만을 부여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복수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버스소풍의 경우 제외) 경찰관 파출소에 신고 및 귀환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숙박계에 기록할 필요도 없다.

出國은 入國과 동일한 曆日에 하여야 한다. 예컨대 24:00時前에 해야한다.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예컨대 病, 사고) 그 지역 관할 경찰관파출소에서 비자를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시켜 준다. 지역관할 파출소라 함은 이 시점에 여행자가 체류하고 있는 지역의 파출소를 말한다.

8. 라이프찌히 박람회에 관한 특별규정

《박람회증명서》

박람회증명서로 여행증명서를 대신한다. 박람회증명서는 라이프찌히 박람회 당국으로부터 증명서 예매를 위임받은 西獨 여행사와 東獨 側 통과소에 소재하고 있는 환전소에서 특별한 절차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자를 위한 박람회증명서는 예매인 경우 여행사의 수수료 포함 25 DM이며, 경제지역 통과소의 환전소에서는 30 DM 이다.

《비 자》

비자는 박람회증명서와 有效한 여행자여권을 제시하면 모든 통과소에서 무료로 발급 받는다. 이 비자로는 1회에 限해서 入·出 國을 할 수 있다.

《승용차 旅行》

라이프찌히 박람회를 참관하는 사람이 승용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특별한 허가없이도 가능하다.

《비행기편 라이프찌히 박람회참석》

상설 航空路는 서베를린/베를린-쇠네펠트 (Berlin-Schönefeld), 브뤼셀 (Brüssel), 비엔 (Wien), 코펜하겐 (Kopenhagen), 쾰리히 (Zürich), 프라하 (Prag) 에 개설되어 있다.

西獨의 여러 도시로부터는 정규 박람회行 노선이 운항되고 있다.
박람회행비행시간표는 박람회증명서 발급소에서 얻을 수 있다.

《換 錢》

每 체류일당 最低 13 DM을 換錢해야 한다. 이 돈은 환급받을 수 없다. 最低額交換 면제조건은 9장 참조.

《申告와 宿泊》

호텔, 여관, 여인숙에서의 숙박 또는 친척과 친지집에서의 숙박도 東獨旅行社만이 수수료를 받고 주선한다. 東獨旅行社에 예약은 東獨 - 7010 Leipzig 전화 79210, FS051540 으로, 전보주소는 숙박소 개소 라이프찌히 (Leipzig)로 하면 된다.

라이프찌히 박람회 참석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받는 체류허가서는 라이프찌히 구역에서만 통용되고 全東獨地域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9. 東獨을 경유한 제 3 국 旅行

◎ 書 類

《개인서류》

西獨人은 東獨여행시와 마찬가지로 서독여권이 필요한 데 그 안에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여행시 그 곳에서 요구하는 入國비자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西베를린 市民은 필요한 개인서류에 관해서 베를린市당국 안내소에 문의한다.

《비 자》

東獨통과를 위한 통과비자는 앞에서 언급한 경계통과소에서 발급 받으며 비용은 5DM이다.

《차량서류》

운전면허와 차량서류는 보통때와 같다. "녹색 보험카드"는 동독통과여행에 필요치 않다.

《조 사》

東獨을 경유해서 제 3 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은 東獨入國 내지 東獨出國 여행자와 똑같이 조사를 받는다. 관세검사도 같다. 따라서, 휴대물품 및 휴대화폐는 入·出國時 요구에 의해서 申告해야 한다.

東獨은 인접국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關稅問題 相互協力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금지품목과 화폐를 搬出하는 사람이 東獨關稅廳에서 발각되는 경우, 同 물품을 압수당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 3 국行 통과시에는 西베를린 발·착 往來時 존재하는 여행편의를 위한 완화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통과도로

다음 통과도로는 제 3 국여행을 위한 東獨통과가 불가능하다.

베르겐 (뚬메) (Bergen)(Dumme) - 잘쯔베델 (Salzwedel)

두더슈타트 (Duderstadt) - 보르비스 (Worbis)

오이센하우젠 (Eußenhausen) - 마이닝겐 (Meiningen)

로텐바흐 (Rottenbach) - 아이스펠드 (Eisfeld)

《스칸디나비아行 통과》

發

뤼베크 (Lübeck) - 슬루투프 (Schlutup) - 젤름스도르프 (Selmsdorf),
헤르레스하우젠 (Herleshausen) - 와르타 (Wartha), 루돌프슈타인
(Rudolphstein) - 히르쉬베르크 (Hirschberg).

着

로슈톡 (Rohstock) - 바르네뮐데 (Warnemünde) 또는
자스넛츠 (Saßnitz).

다음 통과로는 스칸디나비아行 통과가 불가능하다.

라우엔부르크 (Lauenburg) - 호르스트 (Horst)

헬름슈테트 (Helmstedt) - 마리엔보른 (Marienborn)

《폴란드行 통과》

뤼베크 (Lübeck) - 슬루툽 (Schlutup) - 젤름스도르프 (Selmsdorf)

부터 포멜렌 (Pomellen) 또는 포르스트 (Forst) 또는 괴르릿츠 (Görlitz)까지.

라우엔부르크 (Lauenburg) - 호르스트 (Horst) 부터 오데르강가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m oder), 또는 포르스트 (Forst) 또는 괴르릿츠 (Görlitz)까지.

헬름슈테트 (Helmstedt) - 마리엔보른 (Marienborn), 헤르레스하우젠 (Herleshausen) - 바르타 (Wartha) 와 루돌프슈타인 (Rudolphstein) - 히르쉬베르크 (Hirschberg) 부터 포멜렌 (Pomellen) 또는 오데르강가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m oder) 또는 포르스트 (Forst) 또는 괴르릿츠 (Görlitz)까지.

다음 통과로는 폴란드行 통과가 불가능하다.

뤼베크 (Lübeck) - 슬루툽 (Schlutup) - 젤름스도르프 (Selmsdorf)

부터 오데르강가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m oder)까지.

라우엔부르크 (Lauenburg) - 호르스트 (Horst) 부터 포멜렌 (Pomellen)까지.

《체코슬로바키아行 통과》

뤼벡 (Lübeck) - 슐루툽 (Schlutup) - 켈름스도르프 (Selmsdorf)
부터 자이프헤너스도르프 (Seifhennersdorf) 까지.

라우엔부르크 (Lauenburg) - 호르스트 (Horst), 헬름슈테트 (Helmstedt) - 마리에보른 (Marienborn) 헤르레스하우젠 (Herleshausen) - 바르타 (Wartha) 부터 슈밀카 (Schmilka) 또는 쥘발트 (Zinwald) - 게오르겐펠트 (Georgenfeld), 또는 쉰베르크 (Schönberg) 또는 자이프헤너스도르프 (Seifhennersdorf) 까지.

루돌프슈타인 (Rudolphstein) - 히르쉬베르크 (Hirschberg) 부터 쉰베르크 (Schönberg) 또는 자이프헤너스도르프 (Seifhennersdorf) 까지.

다음 통과로는 체코슬로바키아行 통과가 불가능하다.

뤼벡 (Lübeck) - 슐루툽 (Schlutup) - 켈름스도르프 (Selmsdorf) 부터 슈밀카 (Schmilka), 쥘발트 (Zinwald) - 게오르겐펠트 (Georgenfeld) 또는 쉰베르크 (Schönberg) 까지.

루돌프슈타인 (Rudolphstein) - 히르쉬베르크 (Hirschberg) 부터 슈밀카 (Schmilka) 또는 쥘발트 (Zinwald) - 게오르겐펠트 (Georgenfeld) 까지.

《베를린內 통과소》

베를린에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로 여행하려면 드라이린덴 (Dreilinden) - 드레스덴 (Dresden) 통과로를 利用해야 한다.

스칸디나비아 방향으로 통과할 때는 헤르슈트라세(Heerstraße)
- 슈타겐(Steaken) 통과로만이 허용되고 있다.

베를린 - 쇠네펠트(Berlin-Schönefeld) 공항에 갈 때는 발터스도
르프(Waltersdorf)(루도버 Rudower) 街道 통과소를 사용할 수 있
다.

베를린 - 프리드리히슈트라세(Berlin-Friedrichstraße) 驛에서는
이 驛에 정차하는 장거리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 여행자는 이 驛
에서 다만, 장거리열차를 탈 수 있는 東베를린 内の 다른 장거리철
도 驛까지의 통행비자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통과방식

《철 도》

最短거리 선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 로》

차량을 가지고 (오도바이를 포함하여) 東獨으로 통과할 때는
표시되어 있는 통과로로만 가야한다.

통행표지판은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다. 글자와 표지판의 테두
리는 파란 색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인쇄체로 다음과 같이 쓰
여져 있다.

" 프라하 통과로 " 또는 " 바르샤바 통과로 "

통과여행을 떠나기 前에 西獨이나 西베를린의 여행사 또는 東

獨行 境界 통과로에 숙박을 예약한 경우에는 72시간 (3泊)까지
통과여행을 멈출 수가 있다. 예약은 여행출발 4 - 6 週前에 해야
한다.

이 이외의 다른 이유로는 통과여행은 중단될 수 없다.

10. 東獨에서의 공공안전 공공질서

他國領土에 들어 온 여행자에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관한 그곳 규정이 적용되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원칙은 東獨旅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東獨체류중 그곳에서 통용되는 法規範을 준수한 사람은 곤란한 일을 당하리라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과거 東獨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거나 상주했던 사람이 그곳 관청의 허가없이 西獨으로 이주함으로써 東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972년 10月 16日字 東獨法律에 의거, 1972年 1月 1日以前에 東獨을 떠난 경우에는 더 이상 東獨國民이 아니며, 허가없는 동독이탈자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이 日字 以後에 東獨官廳의 허가없이 東獨을 떠난 사람은 東獨官廳의 조치에 따라 형사소추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다음 사항은 허가없이 東獨을 떠난 경우와 국적문제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東獨內에서 東獨의 現行法上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東獨旅行時에 이에 대한 책임이 과해 질 수 있다. 범죄자가 東獨밖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이 범행으로 인해서 서독이나 西베를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이미 형을 마쳤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東獨에서 행한 범죄는 동독수립 23주년을 계기

로 이루어진 1972년 10월 6日字 특사에 관한 東獨 國務會議의 결의에 따라 형벌이 면제된다. 東獨국무회의의 특사결의의 抄錄은 다음과 같다.

" 특사는 1972년 10월 7일 以前에 自由刑 또는 自由刑 이외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자에게 혜택된다.

자유형을 받았던 자는 출옥된다.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형집행이 중지된다. 1972년 10월 7일 이전에 조사가 끝난 형사조치는 특사에 해당된다.

자유형 이외의 모든 형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징계는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면제된다.

살인, 풍속犯, 폭력犯, 나치통치하에서의 人間性에 反한 죄, 국제법상의 채무나 국제협약의 이행문제로 기소된 범죄에는 특사가 해당되지 않는다.

自由刑의 전과가 여러번되는 누범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는다. 특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특사로 인하여 自由刑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사람이 3年 以内에 다시 自由刑의 고의범을 범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던 형벌이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증명서를 근거로 한 入國비자를 소지하고 東獨에 入國하는 사람은 과거의 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예상하지 않아도 된다. 증명서가 하나의 근거가 되지만, 그렇다고 형사소추를 두려

위하지 않아도 좋다는 보증서는 못된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유로 東獨旅行이 가능한지 의심이 가는 사람은 (특히 망명군인) 全獨研究所 (Gesamtdeutsches Institut)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Postfach 1640, 5300 Bonn 1, 전화 (0228) 2071.

◎ 촬영금지

주의!

西獨의 규정과는 달리 동독의 많은 대상물의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중요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철도시설물과 驛, 교량과 육교, 산업시설물, 경계지역 건축물과 경계보호 시설물, 군사시설물 (예컨대, 건축물, 무기, 장비, 행군대형, 근무중인 군인, 병영의 문, 배경으로 찍힌 군사폐쇄지역)

군사유사조직의 활동에도 사진촬영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전투분대, 스포츠, 기술단체)

부 록 I

A. 入國가능 동독접경지역 (市와 州)

DDR-4320	아셔스레벤 (Aschersleben)
DDR-9700	아우어바흐 (Auerbach)
DDR-6200	바트잘쑹엔 (Bad Salzungen)
DDR-5900	아이젠아흐 (Eisenach)
DDR-2730	가데부쉬 (Gadepusch)
DDR-3570	가르데레겐 (Gardelegen)
DDR-5800	고타 (Gotha)
DDR-6600	그라이쯔 (Greiz)
DDR-2420	그레베스뮐-렌 (Grevesmühlen)
DDR-2820	하계노브 (Hagenow)
DDR-3600	할버슈타트 (Halberstadt)
DDR-3240	할덴스레벤 (Haldensleben)
DDR-5630	하일리겐슈타트 (Heiligenstadt)
DDR-6110	힐드부르크하우젠 (Hildburghausen)
DDR-6300	일메나우 (Ilmenau)
DDR-3590	칼베 (Kalbe)
DDR-9650	클링겐탈 (Klingenthal)
DDR-3580	클뤼트체 (Klötze)
DDR-5820	랑엔잘자 (Langensalza)

DDR-6820	로벤슈타인 (Lobenstein)
DDR-2800	루드비히스루스트 (Ludwigslust)
DDR-6100	마이닝겐 (Meiningen)
DDR-5700	뮐-하우젠 (Mühlhausen)
DDR-6420	노이하우스 (Neuhaus)
DDR-5500	노르트하우젠 (Nordhausen)
DDR-9920	월스넛츠 (Oelsnitz)
DDR-3230	오셔스레벤 (Oschersleben)
DDR-3540	오스터부르크 (Osterburg)
DDR-2850	파르힘 (Parchim)
DDR-2910	페르레부르크 (Perleburg)
DDR-9900	플라우엔 (Plauen) (市와 州)
DDR-6840	퓌스넥 (Pößneck)
DDR-4300	크베들린부르크 (Quedlinburg)
DDR-9800	라이헨바흐 (Reichenbach)
DDR-6820	루돌슈타트 (Rudolstadt)
DDR-3560	잘-펠트 (Saalfeld)
DDR-4700	잘즈베델 (Salzvedel)
DDR-6550	장거하우젠 (Sangerhausen)
DDR-6080	슐라이쯔 (Schleiz)
DDR-2700	슈말칼덴 (Schmalkalden)
DDR-5400	슈베린 (Schwerin) (市와 州)

DDR-6400 존네베르크 (Sonneberg)
 DDR-3250 슈타스푸르트 (Staßfurt)
 DDR-3500 슈텐달 (Stendal)
 DDR-6000 주-울 (Suhl) (市와 州)
 DDR-3510 탕거뤼테 (Tangerhütte)
 DDR-3120 완쯔레벤 (Wanzleben)
 DDR-3700 베르니게로데 (Wernigerode)
 DDR-2400 비스마르 (Wismar) (市와 州)
 DDR-3210 볼미어슈테트 (Wolmirstedt)
 DDR-5620 보르비스 (Worbis)
 DDR-6570 조이렌로다 (Zeulenroda)

B. 그 주민이 동독 접경지역으로 당일 체류여행을 할 수 있는 서독접경지역 區와 市.

(1979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확장된 여행가능지역 포함)
 바트키싱엔 (Bad kissingen), 밤베르크 (Bamberg) (市와 州)
 바이로이트 (Bayreuth) (市와 州)
 브라운슈바이크 (Braunschweig) (市와 州)
 첼레 (Celle) 코부르크 (Coburg) (市와 州)
 포르히하임 (Forchheim) 풀다 (Fulda)
 기프호른 (Gifhorn) 괴팅겐 (Göttingen)
 고슬라 (Gosla) 하노버 (Hannover) (州)

하노버 (Hannover) 市에서는 : 이저른하겐 (Isernhagen-NB-Süd)
 하르부르크 (Harburg)(州; 함부르크 - 하르부르크는 아님 Hamberg-
 Harburg)
 하쓰베르게 (Haßberge) 헬름슈테트 (Helmstedt)
 헤르스펠트 - 로텐부르크 (Hersfeld-Rotenburg)
 헤어쪼그툼 라우엔부르크 (Herzogtum Lauenburg)
 힐테스하임 (Hildesheim) 호프 (Hof)(市와 州)
 홀츠민덴 (Holzminden) 카셀 (Kassel)(市와 州)
 크로나흐 (Kronach) 쿨름바흐 (Kulmbach)
 리히텐펠스 (Lichtenfels)
 뤼벡 - 한제슈타트 (Lübeck-Hansestadt)
 뤼코프 - 단넨베르크 (Lüchow - Dannenberg)
 뤼네부르크 (Lüneburg)
 마인 - 킨찌히 - 크라이스 (Main-Kinzig-Kreis)
 마 - 부르크 - 비덴코프 (Marburg - Biedenkopf)
 노이뮌스터 (Neumünster)(市)
 노르트하임 (Nordheim)
 오스터오데 암 하르쯔 (Osterode am Harz)
 오스트홀슈타인 (Ostholstein)
 파이네 (Peine) 플뢰 (Plön)
 뢰 - 그라브펠드 (Rhön-Grabfeld)
 잘쯔깃터 (Salzgitter)(市)

슈발름 - 에데르 - 크라이스 (Schwalm-Eder-Kreis)

슈바이نفurst (Schweinfurst) (市와 州)

제게베르크 (Segeberg)

졸타우 - 팔링보스텔 (Soltau-Fallingb.ostel)

슈토르마른 (Stormarn)

티르셴로이트 (Tirschenreuth)

울젠 (Uelzen)

포겔스베르크크라이스 (Vogelsbergkreis)

웨라 - 마이스너 - 크라이스 (Werra-Meißner-Kreis)

볼펜뷔텔 (Wolfenbüttel)

볼프스부르크 (Wolfsburg) (市)

피히텔산맥의 분지 - 델 (Wunsiedel im Fichtelgebirge)

부 록 II

東獨 반입금지 품목과 허가수수료

A. 東獨의 반입금지 품목

1. 화기 · 총포류와 그 부속품.
2. 무선전신설비 및 그 부속품.
3. 녹음테이프 기타 음향수록물. " 문화유산이거나 현대의 문화적인 창작품 "인 경우의 레코드판은 제외.

4. 군사적 성격을 가진 어린이 장난감.
5. 의약품.(자기가 사용할 경우는 -의약품-項 참조.)
6. 우표와 우표목록.(기념품으로 휴대한 소량, 소액의 우표는 제외됨)
7. 다음과 같은 인쇄물.
 - a) 동독의 우편 신문목록에 실려 있지 않은 신문이나 잡지.
 - b) 주소록.
 - c) 달력과 연감.
 - d) 외설문학작품과 삼류문학작품.
 - e) 공산주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문학작품.
8. 현재 통용되거나 통용되지 않는 화폐(지불수단)와 硬貨(단, 신고의무가 따르는 자유롭게 환전될 수 있는 通貨는 제외된다.)
9. 예금통장, 기타 유가증권.
10. TV수상기 및 그 부속품.
11. 中古品

中古직물류와 구두는 선물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中古직물류와 구두는 최종적으로 사용된 이후에 세탁되었거나 닦여져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소독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B. 반입시 東獨의 허가수수료

東獨으로 물건을 휴대하고 갈 경우, 이에 대한 허가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20% 정도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수료는 東獨內의 小賣價格에 準해서 계산되며 中古직물류와 구두에도 新品과 같은 액수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中古직물류와 구두중 어 린이用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선물로 휴대하고 들어 가는 경우가 많은 물건들에 대한 수수료 는 다음과 같다.

1. 직물류 20%
2. 구두와 가방류 10%
3. 모피와 가죽의류 20%
4. 장난감 10%
5. 세탁기 10%
6. 가정용 전기제품 20%
7. 사진기 20%
8. 라디오와 녹음기 20%
9. 시계 20%
10. 지방, 기름, 버터, 치즈 10%
11. 귀금속, 보석, 진주 및 그 가공품 40%
12. 건축재료 30%
13. 자동차부속품 10%*

東獨의 친척에게 줄 선물을 가져가려는 사람은 친척에게 東獨

*) 모터와 車體에 대하여는 입국시 동독관세청이 허가하고 있지 않다.

內에서의 그 상품의 판매가격을 문의해 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선물의 가격이 허가없이 통과할 수 있는 限度를 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허가수수료가 어느정도 부과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부 록 Ⅲ

반출금지품목과 東獨의 허가수수료

A. 東獨의 중요한 반출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I

(여기에 대해서는 6장의 "반출금지품목"을 참조)

1. 화기·총포류, 탄약.
2. 특허자료, 설계자료, 발명자료, 연구도면, 기술도면, 서류, 지도.
3. 무선전신설비 및 그 부속품.
4. 통용되지 않는 화폐와 硬貨. (통용되는 지불수단 지참은 4
장 "入國時 현금의 지참"을 참조)
5. 예금통장 기타 유가증권.
6. 의약품, 마취제와 독약. (자신이 사용할 경우는 -의약품- 참
조)
7. 예술품, 史的資料, 골동품과 고서.
8. 귀금속, 보석, 준보석과 진주 및 보석, 준보석, 진주가공품.

(여행중 사용품은 제외)

9. 우표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는 소량, 소액의 것은 금지품목에서 제외된다. 東獨은 총 5 마르크까지의 우표휴대를 허가함)
10. 어린이 및 유아옷, 유아용 모직물, 유아용 이불, 기저귀, 포대기, 유모차용 이불과 유모차 장비.
11. 어린이 신발과 유아신발.
12. 작업복, 근무복.
13. 보관 및 수집가치가 있는 광물, 화석 및 암석.

II *

(여기에 대해서는 " 반출금지품목 " 을 참조)

1. 녹음테이프類.(레코드판은 제외)
2. 귀금속제품.(여행중 사용품은 제외)
3. 다음 공장의 생산품인 도자기類.

마이센 (Meißen) 국립도자기 제조소.

"Graf von Henneberg" 민간 도자기 공장.

"Weimar-Prozellan" 민간 도자기 공장.

"Reichenbach/Thüringen" 민간 도자기 공장.

"Freiberg/Sachsen" 민간 도자기 공장.

4. 사진필름과 영화필름.(컬러와 흑백)

*) DM이나 합법적으로 교환된 동독마르크貨로 구입한 물건일 경우에는 반출금지품목에서 제외.

5. 광학제품과 인화지.
6. 가정용, 학술용, 기술용의 모든 종류의 내화 내연 유리제품,
(예나(Jenaer) 민간 유리공장 및 기타 제조공장의 <자알레 유리> 긴다리가 달린 유리잔(Kelchglas), 크리스탈유리.
7. 사진기 등 광학기구.
8. 모든 종류의 육류와 육류제품, (거위, 칠면조 포함)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계란, 분말우유, 설탕, 뱀장어, 아스파라거스, 양파, 과일과 야채통조림, 아몬드(扁桃), 큰 건포도, 씨없는 검은 건포도, 레몬껍질 사탕절임, 야자수줄기, 모든 종류의 향료.
9. 생깃털, 이불용깃털, 솜털.
10. 커튼과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커튼제품.
11. 코스타지(신축성 있는 옷감)내의.
12. 양말류.
13. 침구류.(시이트, 침대잇)
14. 모든 종류의 신발류.
15. TV 및 부속품.
16. 손수건, 행주, 식탁보.
17. 양탄자와 양탄자 접착제.

B. 반출시 東獨의 허가수수료*

*) 법적근거는 東獨의 1968年 12月 12日字 허가수수료 규정이다.

수수료 면제 限度 밖으로 반출금지 품목이 아닌 선물과 구입한 물건 (예컨대 폐쇄계정의 예금으로 구입한 물건) 을 반출할 때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다.

1. 반출금지 품목이 아닌 직물류 50 %.
2. 미술공예품 50 %.
3. 모피의류와 가죽의류 50 %.
4. 장난감류 50 %.
5. 반출이 허가되어 있는 도자기제품 50 %.
6. 반출이 허가된 가정용 유리와 산업용 유리 50 %.
7. 가정용 전기제품 50 %.
8. TV 수상기 50 %.
9. 녹음기 50 %.
10. 시계 50 %.
11. 초콜렛 50 %.
12. 담배, 담배제품 20 %.
13. 전축판 20 %.
14. 가구 50 %

물건의 가격과 수수료는 東獨內의 현행 소매가격에 준해서 계산된다.

부 록 IV

서독의 규정*

여행왕래시 거의 휴대하지 않는 극히 일부 물건에 한해서 허가가 필요하다. 의문나는 경우에는 관할 주 경제당국에 문의하라.

○ 동독으로의 선물휴대

무역상 기타 영리적인 물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물건은 동독으로 여행할 때 종류와 수량으로 보아 적당한 한계까지 선물로 지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물건들 가격 총액이 5000 DM을 넘어서는 안된다. 5000 DM이 넘을 때는 운송허가장 (Warenbegleit-schein)이 필요하다.

○ 귀향시의 물건휴대

동독이나 동베를린에서 귀향할 때에는 일반적인 개인소유물 외에 동독 주민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기념품은 종류와 수량의 적당한 한계내에서 -즉 액수가 5000 DM까지는- 개별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서독에서 소비세를 무는 동독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담배류, 주류) 다음 한도내에서는 면세된다.

1. 담배제품 (17세 이상자에 한함) : 권련 200 가치, 또는 100 가치의 소여송연 또는 50개의 여송연과 250 ㄱ의 엽연초.

*) 동독의 규정에 관해서는 5장과 6장 참조.

2. 주류.(17세 이상자에 한함)

23° 이상의 위스키나 브랜디 1ℓ

22° 이하의 위스키나 브랜디 2ℓ

2ℓ의 샴페인 또는 '리퍼르' 술.

3. 50g의 향수와 0.25ℓ의 화장수.

4. 원두 또는 볶은 커피 250g.

커피 엑기스 100g.(15세 이상인 자에 한함)

5. 100g의 차, 40g의 차엑기스.

6. 그 밖에 의무적으로 소비세가 붙는 제품(예컨대, 맥주, 설탕, 소금, 조명기구, 성냥, 트럼프)은 영리적인 목적에 이용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총액 100DM을 넘지 못한다.

7. 승용차탱크에 들어 있는 연료.

방문자가 동베르린의 동독 검사소를 경유하지 않고 동베르린의 프리드리히슈트라세역에서 구입한 상품에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부 록 V

동독도로에서의 차량구조 작업기구에 관한 안내

동독측 원문

친애하는 운전자 여러분!

동독의 도로에서는 차량운전자를 위하여 1일 24시간 신속한 사

고차량 운반 및 구조반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조치가 이루어진다.

사고 차량 운반 ;

- 사고 또는 파손시 차량 및 그 적재물의 구조.
- 기술적인 협조를 도모하고 원활한 통행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자동차 구조반은 차량이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기술과 구할 수 있는 부속품의 한도내에서 간단한 수리를 한다.

이와 같은 구조작업은 中央 긴급구조소 (Zentral Dispatzcherstelle)를 통해서 각 해당지역에서 행해진다. 전화번호는 주유소에서, 고속도로 시외전화를 통해서, 휴게소에서 그리고 독일우체국 (Deutsche Post) 민원실에서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 6시부터 22시까지 東獨 全地域의 차량수리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정식 차량구조작업반을 부를 수 있다.

구조작업은 일정한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구조반에 의해 차량소재지에서 이루어진다.

사고차량 운반작업과 구조작업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한 공장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주소 내지 전화번호는 주유소, 고속도로 시외전화, 관할경찰관과 출소, 모든 차량공장 및 區 (크라이스)廳에서 그리고 독일우체국의 민원봉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 외에 도로표지판 - 고장구조 (Panneuhilfe) -에도 차량구조작업반의 전화번호가 기재

되어 있다.

전화로 구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1. 차량의 특징, 제조공장 및 車型名
2. 차량의 소재지
3. 차주의 주소
4. 추정되는 고장원인
5. 추정되는 필요작업.(자동차구조 서어비스, 고장차운반)

부 록 VI

도로교통규정

일반적으로 西獨과 同一한 교통규칙이 통용된다. 중요한 규정은 다음에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책에 실린 안내사항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조합이 간행한 해당 자료 참조가 요망된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중의 행동에는 주의와 상호간의 양보가 요구되고 책임의식, 숙달과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차량은 법에 따라 운행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하며 교통상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승용차를 가지고 東獨行 또는 東獨경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 규정이 중요하다.

(주의 : 오토바이편 여행은 통과여행에만 허가됨.)

1. 음주운전 절대 금지!

2. 최대속도.

a) 고속도로 ;

승용차와 오토바이 100km/h

그외의 모든 차량 80 km/h

b) 소도시 외곽에 위치한 고속도로 以外の 도로 :

모든 차량 80 km/h

c) 소도시内 ; 모든 차량 50 km/h

d) 철로를 통과하기 전 80m 지점부터는 최대속도 50 km/h

e) 사고차량 운반시 :

고속도로에서 70 km/h

그외의 도로에서 50 km/h

3. 우선통행 (선순위 통행)

서독지역과 同一한 규정이다.

區 (크라이스) 를 往來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통행권이 없다. 西

獨과 마찬가지로 우측이 좌측에 앞선다 (rechts vor links)

는 원칙이 통용된다.

전차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순위통행이 허용된다.

4. 정차와 주차

西獨과 同一한 규정이다.

상세한 일반정차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차는 다음 장소에서 금지된다.

- a) 좁고 視界가 나쁘거나 기타 이유로 위험한 장소.
- b) 통행금지線, 횡단보도, 교차로와 도로합류지점 前後 10m지점.
- c) 정거장.
- d) 고속도로의 차도, 고속도로의 주변지대 및 그 외의 부대시설.
- e) 경계신호, 지시신호와 지시등 (신호용)의 점열등과 같은 것이 주차나 정차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의 장소.
- f) 차도 주변의 황색직선과 황색 교통 표지가 그려져 있는 노면.
- g) 철도건널목 前後 80 Meter.

상세한 주차금지사항

다음 장소에서는 주차가 금지되고 있다.

- a) 모든 장거리수송도로의 차도.
 - b) 정차금지지역과 시간별로 제한되어 있는 정차금지지역.
 - c) 집터와 주차장의 출입구.
 - d) 주차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의 出入에 방해가 되는 경우.
 - e) 주차시간 제한이 있는 주차장에는 주차개시 시간이 주차 표시판에 기록되고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차량에 게시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 규정된 주차시간이 지나면 주차장소를 떠나야 한다.

f) 차도 옆에 있는 황색점선 및 표시면. (황색 지그재그선으로 그려져 있음)

g) 일방통행로의 좌측면.

5. 교통표지.

西獨과 같은 교통표지가 통용되고 있다.

西獨지역에서 통용되는 <암석 낙하>, <측면에서 부는 바람> <일방통행로로 좁은 차도>, 동물과 자전거 주행자에 대한 표지 및 팔각형의 멈춤판(정지! 선순위 통행보장!)은 1978년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 되었다.

횡단보도는 같은 교통표지와 "줄무늬"로 표시되고 있다. 횡단보도에 접근시에 운전사는 속력을 적시에 점차로 줄여야 하며 보행자가 있어 계속 주행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횡단보도 따위의 차도표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옆을 통과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진행방향 변경의 경우에는 - 차선변경도 마찬가지로 - 방향표시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차선변경시에 두 차량사이의 안전거리 사이로 끼어들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정차나 주차후 직진할 경우 또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시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좌회전시 마주보는 좌회전차가 먼저 회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좌회전차를 위해서 초록색의 신호등이 (검은 색 바탕에 초록색의 화살표) 도입 되었다. 등이 켜질 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6. 경찰과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

西獨과 同一한 규정이지만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

東獨에는 신호등에 추가적으로 푸른색과 황색이 동시에 켜지는 신호가 있다. 이 신호는 운행방향은 아직 그대로 이지만 곧 황색등으로 바뀔 것임을 의미한다.

교통순경이 오른팔을 앞쪽으로 뻗는 것은 소위 3면차단(Drei-seiten-Sperrwg)을 의미하며, 교통순경의 왼쪽에 있는 차량만이 진행할 수 있다. 운전사는 빨간 불일 경우에도 초록색 화살표 신호가 나오거나 보행자나 차량의 장애가 없거나 위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다.

교통순경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순경이 손짓으로 회전을 허용한 때에는 우회전할 수 있다.

7. 철도통과로.

세부적인 속도제한에 관해서는 이미 2번에서 언급되었다.

8. 특수신호.

모든 운전사는 특수신호를 보내면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능한 한 오른쪽 멀리 피하며 정차하여야 한다. 특수신호는 파란등 클락손, 비상벨, 波狀사이렌 등이다.

파란색 등 양옆에 빨간등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차량의 행렬을 지휘하는 차량이다.

신호대기차량의 진행 내지 보행자의 차도보행은 파란색등과 녹색 신호의 마지막 차량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허용된다.

9. 추월.

차선변경을 할 때는 신호를 해야 한다. 앞의 5번 참조.

10. 일반적인 지시사항.

a) 고장난 차를 운반할 때의 허용속도

최대속도 50 km/h, 고속도로 70 km/h.

b)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이미 언급한바대로 통과여행일 때만 허용된다)는 항상 헬멧을 써야 한다.

c) 東獨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198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어 있다.

d) 7歲以下の 어린이는 자동차 앞좌석에 동승시킬 수 없다.

e) 교통사고시 행동.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된 모든 교통관여자는 즉각 정차하고 사고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지점에서 필요한 구조조치와 안전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설명하여 다른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에 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남기고 가야한다.

11. 질서위반.

도로교통시에는 규칙을 신중하게 엄수하는 것이 좋다. 질서를 위반했을 때는 10마르크~100마르크까지의 질서벌을 예상해야 한다.

東獨관청은 벌금을 DM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질서벌 조치에 대한 이의는 관할경찰파출소에 제기할 수 있다. 西獨지역과 西베를린에서도 문서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에 관해서는 당신에게 교부되어 있는 형벌부과에 관할 지시사항을 살펴보시오. (기한을 지키려면 동독에 문서를 보낼 때 충분한 우편경과시간을 고려에 넣을 것)

서독지역이나 서베를린의 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관할 동독관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서독정부의 생각에 따르면 그와 같은 이의제기가 결코 가망 없는 일은 아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이의제기의 경우 그以後 여행시에 동독기관에 의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는 않다.

주의사항 :

이 안내책자는 東獨으로 떠나는 여행자들을 위해 중요하면서도 실질적인 안내를 준다.

물론 개별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겠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의 法的인 규정을 더 정확히 열람해 본 후에만 대답되어질 수 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안내서에 모든 상황들이 언급될 수는 없으며, 해당되는 모든 동독법 규정이 설명되거나 반영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동독으로 가지고갈 수 있는지 또는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서 미리 정확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이 의문사항, 언급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다면 다음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Gesamtdeutsches Institut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Postfach 1640

5300 Bonn 1, Telefon(0228) 2071.

부록Ⅶ. 동독접경지역으로 入國하기 위한 신청양식 (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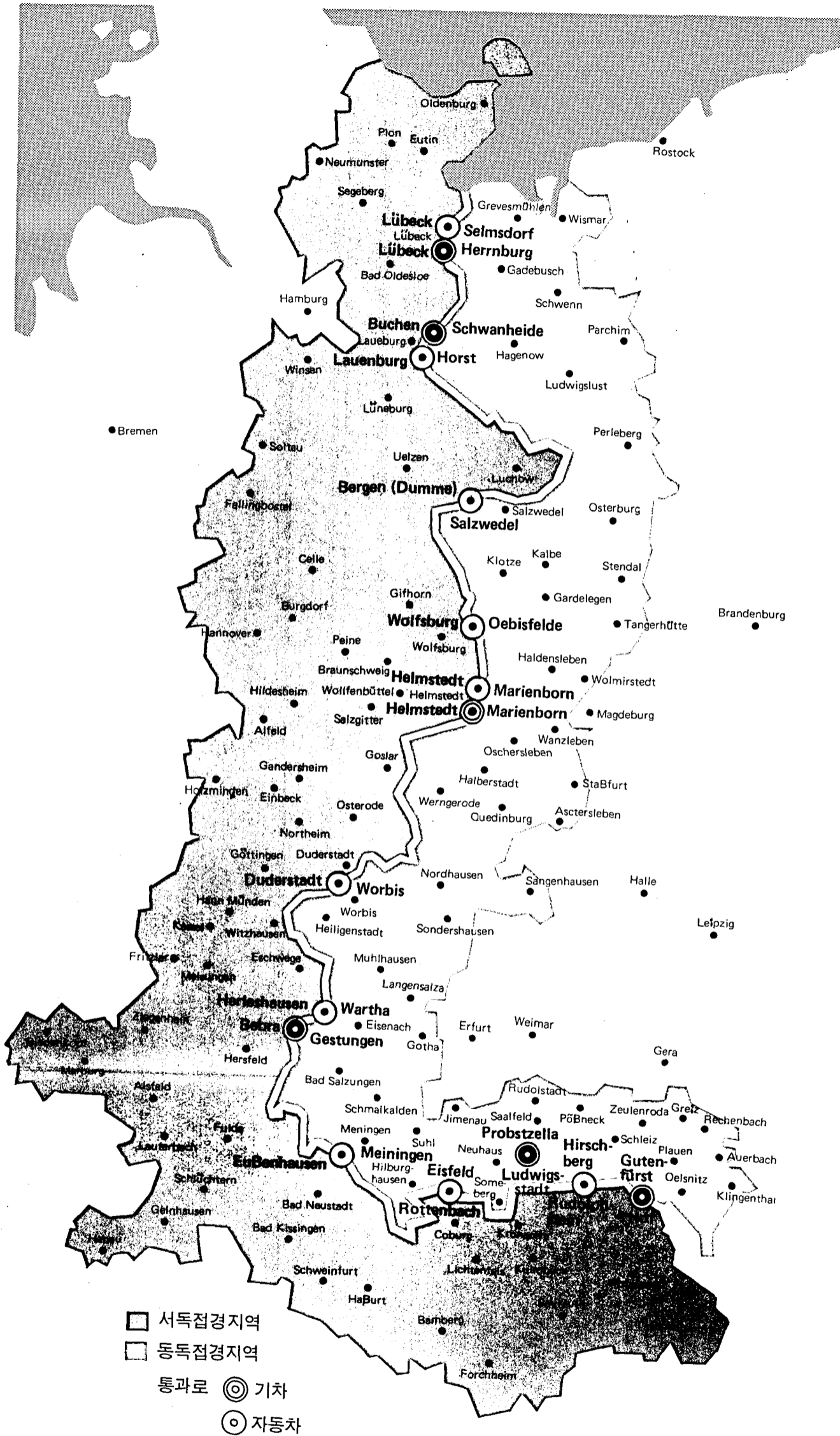
<p>동독입국신청서</p> <p>독일연방공화국 시민용</p>		<p>타이프라이터 또는 검은잉크로 기입할것.</p>	
		1	2
		3	4
姓名		남*	여*
생년월일과 출생지		가족신분	
우편번호	거주지 / (크라이스) 區	街 / 번지	
직업			
동독內의 당일체류			
월	일	년	~에서 장소 (크라이스) 區
경계 (국경) 통과소		여권번호와 발행관청	
16세까지의 동행하는 어린이 (姓名, 나이) 단 양육권자의 신청서에만 기입한 것.		차량표시	
* 해당란에 십자표를 그으시오.			

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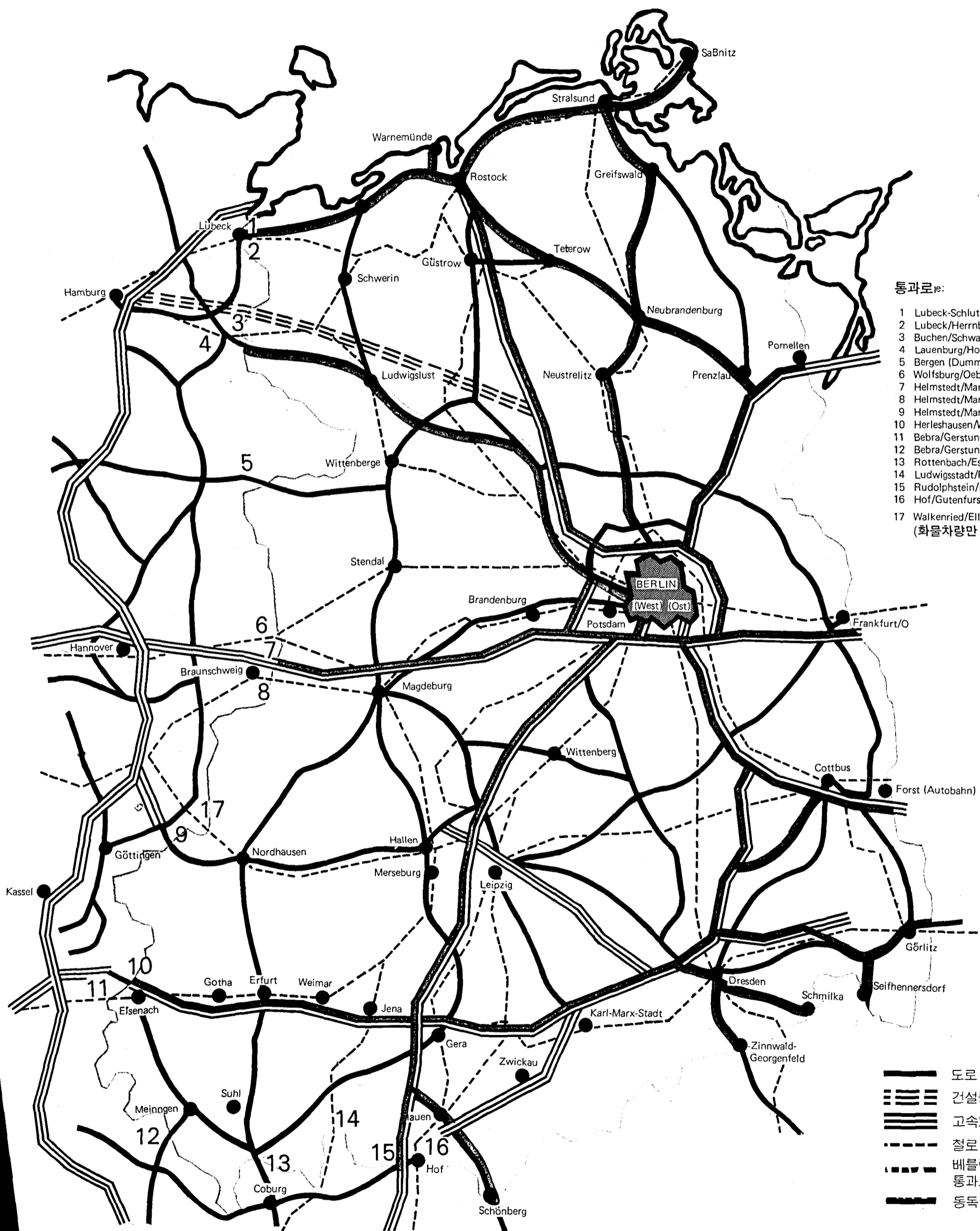
금년중의 동독체류	횟수 : 총체류일 :	최종 체류장소 :
동독내에 과거에 거주한 경우 최종 거주지 주소		
장소 :	月. 日. 19 〇〇	
서명		
부기사항을 위한 공란	A	B
	C	D

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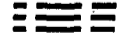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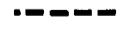




Oldenburg, Rostock, Plön, Eutin, Neumünster, Segeberg, Grevesmühlen, Wismar, Lübeck, Seimisdorf, Lübeck, Lübeck, Herrnburg, Bad Oldesloe, Gadebusch, Schwenn, Hamburg, Buchen, Schwanheide, Lauenburg, Horst, Hagenow, Parchim, Winsen, Lüneburg, Ludwigslust, Perleberg, Sothau, Uelzen, Luchow, Osterburg, Fallingb., Salzwedel, Klotze, Kalbe, Stendal, Burgdorf, Gifhorn, Gardelegen, Wolfenbüttel, Tangerhütte, Peine, Wolfsburg, Oebisfelde, Haldensleben, Braunschweig, Helmstedt, Marienborn, Wolmirstedt, Hildesheim, Wolfenbüttel, Helmstedt, Magdeburg, Salzgitter, Goslar, Wanzleben, Gandersheim, Osterode, Oschersleben, Halberstadt, Staßfurt, Holzmingen, Einbeck, Werngerode, Quedlinburg, Aschersleben, Northeim, Nordhausen, Sangerhausen, Halle, Göttingen, Duderstadt, Nordhausen, Sangerhausen, Halle, Heiligenstadt, Sondershausen, Worbis, Heiligenstadt, Sondershausen, Muhlhausen, Langensalza, Erfurt, Weimar, Gera, Harleshausen, Wartha, Eisenach, Gotha, Bad Salzungen, Rudolstadt, Zeulenroda, Gretz, Rechenbach, Alsfeld, Fulda, Probstzella, Schleiz, Plauen, Auerbach, Lauterbach, Eubachhausen, Meiningen, Eislefeld, Ludwigstadt, Hirschberg, Gutenfürst, Oelsnitz, Klingenthal, Schöckern, Gelnhausen, Bad Neustadt, Rottenbach, Coburg, Kitzingen, Schweinfurt, Lichtenfels, Bamberg, Haßfurt, Forchheim



통과로:

- 1 Lubeck-Schlutup/Selmsdorf
- 2 Lubeck/Herrnburg (Bahn)
- 3 Buchen/Schwanheide (Bahn)
- 4 Lauenburg/Horst
- 5 Bergen (Dumme)/Salzwedel
- 6 Wolfsburg/Oebisfelde (Bahn)
- 7 Helmstedt/Marienborn
- 8 Helmstedt/Marienborn (Bahn)
- 9 Helmstedt/Marienborn (Bahn)
- 10 Herleshausen/Wartha
- 11 Bebra/Gerstungen (Bahn)
- 12 Bebra/Gerstungen (Bahn)
- 13 Rottenbach/Esfeld
- 14 Ludwigsstadt/Probstzella (Bahn)
- 15 Rudolphstein/Hirschberg
- 16 Hof/Gutenfurst (Bahn)
- 17 Walkenried/Eilrich
(화물차량만 허용)

-  도로
-  건설중인 고속도로
-  고속도로
-  철로
-  베를린 (서)착·발
통과도로
-  동독 통과도로

